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저작권자의 침해 처벌에 대한 권한 강화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1월 28일

청 원 인

성 명 : 유지원

주 소 :

전화번호 : 없음(휴대전화:)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유지원
건명	저작권자 저작물 침해 처벌에 대한 권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비친고제 개정
소개년월일	2016년 1월 28일

소개의견

청원인 유지원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6년 1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저작권자 저작물 침해 처벌에 대한 권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비친고제 개정』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저작권법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비친고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 3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에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제 3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고발할 시, 경찰 조사를 거쳐 송치한 후 검찰에서 저작권자에게 형사재판 여부 결정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14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제 3자에 의해 고발이 이루어졌을 시 죄에 대한 형사 재판의 청구여부는 제 3자의 고발과는 별도로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
제 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제 3자에 의해 고발이 이루어졌을 시 죄에 대한 형사 재판의 청구여부는 제 3자의 고발과는 별도로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제124	

<p>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p> <p>3. 삭제</p>	<p>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p> <p>3. 삭제</p>
---	---

소 개 의 원

유 지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권법 140조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저작재산권 복제 등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저작권 관련 고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해 형벌권이 남용되고 있어 연간 100만명 이상의 일반 시민이 협박을 당하고 그 중 10만명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범법행위와 달리 저작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저작권자 의사에 반해 수사가 이뤄지거나 제3자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제도의 의의나 저작권의 인격권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주요골자

저작권법 제 140조(고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제 3자에 의해 고발이 이루어졌을 시 죄에 대한 형사 재판의 청구여부는 제 3자의 고발과는 별도로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
제 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그러나 제 3자에 의해 고발이 이루어졌을 시 죄에 대한 형사 재판의 청구여부는 제 3자의 고발과는 별도로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u>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제124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